



도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.



호외 2023. 4. 5.(수)

www.jeonbuk.go.kr

**조 례**

○ 전라북도 조례 제5248호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..... 1

**입법예고**

○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3-10호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· 3

**공 고**

○ 전라북도 공고 제2023-703호 전라북도의회 제출안건 공고 ..... 17

발행 전라북도 (편집 대변인실 ☎(063)280-2186)  
(54968)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

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원

2023년 4월 5일

전라북도 조례 제5248호

###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

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“소셜벤처기업”이란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제10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”을 “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”으로, “「전라북도 물품관리 조례」”를 “「전라북도 물품관리 조례」에 따르며 시설 대관료는 별표의 기준에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- 1. 전라북도가 주최, 주관, 후원하는 행사
- 2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, 주관하는 사회적경제 관련 행사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- 1. 도내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: 사용료의 100분의 50
- 2. 도내 소재지를 두고 있는 소셜벤처기업 : 사용료의 100분의 50
- 3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관련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기관·단체가 위탁업무 수행을 위해 입주한 경우 : 사용료의 100분의 50
- 4.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: 사용료의 100분의 30

제7조제2항 중 “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”을 “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”으로 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대관료 부과기준

구 분	규모	기준시간	대관료(원)		비고
			일 반	입주업체	
다목적 강연실 (1개 실)	150명 (379m <sup>2</sup> )	4시간	100,000	50,000	냉·난방 음향·영상장비 포함
체험교육장 (1개 실)	50명 (215m <sup>2</sup> )	4시간	40,000	20,000	
세미나실 (2개 실)	40명 (86m <sup>2</sup> )	4시간	20,000	10,000	
분임토의실 (8개 실)	20명 (48m <sup>2</sup> )	4시간	10,000	무료	
숙박시설 (10개 실)	2인실 (30m <sup>2</sup> )	1실 1박 (익일200까지)	20,000		전기·냉난방 포함
	8인실 (48m <sup>2</sup> )		80,000		
시제품 제작실	재료비 등 실제 사용요금 부과				

- \* 대관료는 사용예정일로부터 3일 전까지 선납 원칙
- \* 입주업체 사용료는 직접사용 하는 경우만 적용
- \* 기준시간 : 주간 오전(09:00~13:00) 오후(13:00~17:00)
- \* 4시간 이내는 기준시간으로 사용료 산정
- \* 사용시간 초과 시 매 1시간마다 사용료의 25% 가산
- \* 야간사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, 필요에 따라 허가 후 사용가능
- \* 상시 개방공간으로 지정 시 대관료 면제
- \* 이용 전 상태로 원상복구가 원칙이며, 파손 및 도난 발생 시 당해 사용자가 배상 원칙
- \* 예약취소 시 사용료를 전액 반환하며, 사용예정일 전 3일 이내 예약을 취소한 경우 요금의 10%를 공제 후 반환하고, 사용일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사용일수(시간)만큼 일할(시간당) 계산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반환한다.
- \* 운영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취소 시 사용료의 100%를 배상한다.
- \* 과오납금은 과오납된 날 즉시 반환하며, 이후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된 날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.

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3-10호

「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「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4월 4일

전라북도지사

###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

#### 1. 제안이유

세계 경제시장의 흐름과 투자적기를 파악하는 등 국내·외적인 대응능력과 정책 방향 및 경제흐름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전문가 확보를 위해 외국인 투자 유치 분야의 직급을 조정하고자 함

#### 2. 주요내용

가. 전라북도 공무원 정원표 조정(안 별표 3)

- 1) 정원의 총수 : 5,471명(정원변동없음)
- 2) 직급별 정원 변동 내역

구 분	현 행	개정안	증 감	비고
총 계	5,471명	5,471명	변동없음	
정무직 계	3명	3명	변동없음	
별정직 계	14명	14명	변동없음	
일반직 계	1,774명	1,774명	변동없음	
2-3급 소계	3명	3명	변동없음	
3급 소계	10명	10명	변동없음	
3-4급 소계	2명	2명	변동없음	
4급 소계	76명	76명	변동없음	
5급 소계	303명	304명	증 1명	
6급 소계	604명	603명	감 1명	
7급 소계	566명	566명	변동없음	
8급 소계	140명	140명	변동없음	
9급 소계	61명	61명	변동없음	
전문경력관 소계	9명	9명	변동없음	
연구직 계	198명	198명	변동없음	
지도직 계	26명	26명	변동없음	
소방공무원 계	3,456명	3,456명	변동없음	

**3. 참고사항**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)

다. 협의 : 기업애로해소지원단, 감사관, 인권담당관, 예산과, 법무행정과, 여성가족과

라. 입법예고 : 2023. 4. 4. ~ 2023. 4. 9.(5일간)

**4. 의견제출**

가.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. 4. 9.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지사(참조:정책기획관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 제출사항

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)

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·주소·전화번호

다. 의견 제출할 곳 : 54968/전주시 완산구 호자로 225 전북도청 정책기획관 (전화 : 063-280-4238, FAX : 063-280-2119)

라. 의견 제출방법 : 서면, 전화, 팩스, 직접방문, 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

마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청 정책기획관 조직관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(063-280-4238)

**5.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: 붙임**

전라북도 규칙 제 호

**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**

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을 다음 별지와 같이 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

전라북도 공무원 정원표(제61조 관련)

직종별	직급별	기관별		합계	본청	의회 사무처	직기 속관	사업소	합의 제정 기	정관
		직	렬							
총계				5,471	1,450	112	3,551	336		22
정무직계				3	1					2
정무직 소계				3	1					2
도지사				1	1					
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				1						1
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				1						1
별정직계				14	6	8				
1급상당 소계				1	1					
관리관·별정(정무부지사)				1	1					
4급상당 소계				7	1	6				
비서실장				1	1					
행정·별정				4		4				
행정·기술·별정				2		2				
5급상당 소계				2	2					
비서관				1	1					
국제관계대사				1	1					
6급상당 소계				3	1	2				
비서				3	1	2				
7급상당 소계				1	1					
비서				1	1					
일반직계				1,774	1,251	104	96	303		20
2-3급 소계				3	2	1				
2~3 이사관·부이사관				3	2	1				
3급 소계				10	9		1			
3 부이사관				10	9		1			
3-4급 소계				2	2					
3~4 행정·기술				2	2					
4급 소계				76	56	4	5	10		1
4 행정				29	15	4	4	5		1
4 행정·기술				43	41			2		
4 기술·농업연구				1			1			
4 기술·수의연구				1				1		
4 기술·녹지연구				1				1		
4 기술·해양수산연구·어촌지도				1				1		
5급 소계				304	246	14	10	30		4
5 행정				133	100	10	9	10		4
5 공업				1	1					

직종별	직급별	기관별		합계	본청	사무회차	직기	수관	사업소	합행기	제정관
		직	렬								
5	농업			5	4				1		
5	녹지			3	2				1		
5	해양수산			5	5						
5	시설			18	16				2		
5	운전			1	1						
5	행정·사회복지			12	12						
5	행정·숙기			1		1					
5	행정·공업			11	10				1		
5	행정·농업			16	13	1			2		
5	행정·사서·시설			1	1						
5	행정·녹지			2	2						
5	행정·해양수산			1	1						
5	행정·보건			1	1						
5	행정·환경			4	4						
5	행정·시설			28	27	1					
5	행정·방재안전			1	1						
5	행정·방송통신			3	3						
5	행정·학예연구			1	1						
5	공업·환경			1	1						
5	공업·시설			2	1				1		
5	농업·수의			5	5						
5	녹지·녹지연구			1					1		
5	수의·수의연구			6	2				4		
5	해양수산·시설			1	1						
5	해양수산·해양수산연구			1					1		
5	해양수산·어촌지도			2					2		
5	해양수산·해양수산연구·어촌지도			1					1		
5	보건·간호			5	5						
5	보건·약무			1	1						
5	환경·시설			3	3						
5	행정·공업·환경			3	3						
5	행정·공업·시설			3	2			1			
5	행정·농업·수의			0							
5	행정·농업·시설			1	1						
5	행정·시설·해양수산			1	1						
5	행정·보건·식품위생			1	1						
5	행정·보건·공업			1	1						
5	행정·환경·녹지			1	1						
5	행정·환경·사회복지			1		1					
5	농업·환경·수의			1	1						
5	수의·수의연구·농업연구			2					2		
5	농업·농업연구·수의·수의연구			1					1		



직종별	직급별	기관별		합계	본청	의사 회 처	직기 속관	사업소	합행 기	제정 관
		직	렬 별							
	5	행정·수의·보건·식품위생		1	1					
	5	행정·환경·시설		4	4					
	5	행정·시설·사회복지		1	1					
	5	행정·시설·방재안전		2	2					
	5	보건·식품위생·의무		1	1					
	5	공업·시설·방재안전		1	1					
	5	보건·의무·약무·간호		1	1					
	6급	소계		603	474	40	12	70		7
	6	행정		233	184	28	7	9		5
	6	세무		7	7					
	6	전산		15	13	1	1			
	6	사회복지		8	7			1		
	6	사서		2	1	1				
	6	속기		2		2				
	6	공업		22	20	1	1			
	6	농업		23	20			3		
	6	녹지		13	9			4		
	6	수의		11	3			8		
	6	해양수산		25	16			9		
	6	보건		4	4					
	6	환경		10	10					
	6	시설		70	62	1		7		
	6	방송통신		5	5					
	6	운진		7	4	1		2		
	6	행정·세무		5	5					
	6	행정·전산		10	9	1				
	6	행정·사회복지		7	6					1
	6	행정·사서		1	1					
	6	행정·공업		4	3			1		
	6	행정·농업		10	8	1		1		
	6	행정·녹지		2	1			1		
	6	행정·보건		1	1					
	6	행정·환경		7	7					
	6	행정·시설		18	17	1				
	6	행정·방재안전		1	1					
	6	행정·방송통신		2	2					
	6	행정·학예연구		1				1		
	6	전산·방송통신		3	2					1
	6	전산·시설		1	1					
	6	사회복지·보건		1	1					
	6	사회복지·간호		1	1					
	6	공업·환경		1	1					

직종별	직급별	기관별		합계	본청	사무회처	직기	속관	사업소	합의제정관
		직	렬							
6	6	공업·운전		1					1	
6	6	농업·시설		1					1	
6	6	농업·수익		8	8					
6	6	농업·농업연구		2			1		1	
6	6	녹지·시설		1	1					
6	6	녹지·녹지연구		2					2	
6	6	해양수산·해양수산연구		2					2	
6	6	수익·농업연구		1					1	
6	6	수익·수익연구		16	2				14	
6	6	보건·식품위생		8	8					
6	6	보건·의료기술		2	2					
6	6	보건·간호		4	3		1			
6	6	보건·약무		1	1					
6	6	보건·환경		2	2					
6	6	보건·공업		1	1					
6	6	환경·시설		1	1					
6	6	시설·방재안전		1	1					
6	6	행정·사회복지·보건		1		1				
6	6	행정·공업·시설		3	3					
6	6	행정·시설·녹지		1	1					
6	6	행정·시설·방송통신		1	1					
6	6	사회복지·보건·환경		1	1					
6	6	행정·보건·간호·약무		1	1					
6	6	통신운영		1	1					
6	6	기계운영		2			1		1	
6	6	사무운영		5	4	1				
7급		소계		566	372	31	35		122	6
7	7	행정		193	149	20	11		7	6
7	7	세무		7	7					
7	7	전산		12	9		2		1	
7	7	사회복지		9	9					
7	7	사서		1	1					
7	7	속기		3		3				
7	7	공업		24	13		3		8	
7	7	농업		19	13		2		4	
7	7	녹지		12	7				5	
7	7	수익		51	3				48	
7	7	해양수산		18	9				9	
7	7	보건		2	2					
7	7	환경		14	11		3			
7	7	시설		57	47	1	2		7	
7	7	방재안전		1	1					

직종별	직급별	기관별		합계	본청	의사회치	직기	수관	사업소	합행기	제정관
		직	렬								
7		방송통신		7	6				1		
7		위생		1			1				
7		시설관리		1			1				
7		운전		15	6	2	1		6		
7		행정·세무		2	2						
7		행정·전산		9	9						
7		행정·사회복지		6	6						
7		행정·사서		2	2						
7		행정·공업		7	6	1					
7		행정·농업		3	1	2					
7		행정·녹지		1					1		
7		행정·보건		2	1		1				
7		행정·환경		4	3		1				
7		행정·시설		7	6				1		
7		행정·방재안전		3	3						
7		행정·방송통신		1	1						
7		행정·농촌지도		1			1				
7		전산·방송통신		3	3						
7		전산·농업연구		1			1				
7		공업·녹지		2			1		1		
7		공업·시설		2	2						
7		농업·시설		1					1		
7		농업·수의		5	4				1		
7		행정·학예연구		1					1		
7		농업·농업연구		1					1		
7		녹지·녹지연구		1					1		
7		수의·수의연구		8					8		
7		해양수산·환경		2	2						
7		해양수산·어촌지도		1					1		
7		보건·식품위생		8	7		1				
7		보건·약무		1	1						
7		보건·간호		8	6		1		1		
7		시설·방송통신		1	1						
7		시설·방재안전		2	2						
7		시설·사회복지		1	1						
7		방재안전·방송통신		1	1						
7		행정·사회복지·보건		2		2					
7		행정·보건·간호		1	1						
7		행정·시설·해양수산		1	1						
7		행정·시설·방재안전		3	3						
7		행정·시설·공업·녹지		2					2		
7		사회복지·보건·간호		1					1		

직종별	직급별	기관별		합계	본청	의사 회 처	직기 서관	사업소	합행 기	제정 관
		직	렬 별							
	7	농업·시설·공업		1				1		
	7	농업·보건·식품위생		1	1					
	7	공업·시설·방재안전		1	1					
	7	전화상담운영		1	1					
	7	전기운영		0						
	7	기계운영		1			1			
	7	열관리운영		2			1	1		
	7	사육운영		1				1		
	7	사무운영		3	1			2		
	8급	소계		140	56	9	22	51		2
	8	행정		40	24	4	5	5		2
	8	전산		1				1		
	8	사회복지		2	2					
	8	사서		1			1			
	8	숙기		3		3				
	8	공업		17	2	1	7	7		
	8	농업		6	3			3		
	8	녹지		6	1			5		
	8	해양수산		8	1			7		
	8	보건		2	1		1			
	8	환경		1			1			
	8	시설		13	6			7		
	8	운전		12	2	1	5	4		
	8	행정·전산		3	2			1		
	8	행정·사회복지		2	2					
	8	행정·농업		1	1					
	8	행정·시설		1				1		
	8	행정·보건		1	1					
	8	전산·방송통신		1	1					
	8	공업·환경		1	1					
	8	공업·운전		2				2		
	8	시설·방재안전		1	1					
	8	시설·공업		1				1		
	8	보건·식품위생		2	2					
	8	보건·간호		1	1					
	8	전기운영		2			1	1		
	8	전화상담운영		0						
	8	기계운영		5	1			4		
	8	농림운영		2				2		
	8	사무운영		2	1		1			
	9급	소계		61	29	5	11	16		
	9	행정		3	2	1				

직종별		기관별		합계	본청	의사 회 처	직기 서관	사업소	합의 제 정 관
직급별	직렬별	직	렬						
	9	공	업	2		1	1		
	9	농	업	2				2	
	9	시	설	1	1				
	9	해	양수산	1				1	
	9	방	송통신	1	1				
	9	운	전	7			1	6	
	9	행	정·시설	2				2	
	9	위	생·조리	1	1				
	9	통	신운영	2		1	1		
	9	기	계운영	3			2	1	
	9	사	육운영	1				1	
	9	사	무운영	35	24	2	6	3	
전문경력관 소계				9	5			4	
가군 소계				1	1				
	가	비	상계획관	1	1				
	가	경	제분석전문위원						
나군 소계				8	4			4	
	나	홍	보연구원	1	1				
	나	화	생방관리원	1	1				
	나	발	간실장	1	1				
	나	보	존문서관리원	1	1				
	나	농	기계교육교관	3				3	
	나	농	업인교육전문위원	1				1	
연구 직 계				198	5		160	33	
연구관 소계				38	2		32	4	
	관	학	예연구	4	2			2	
	관	농	업연구	16			16		
	관	녹	지연구	1				1	
	관	수	의연구	1				1	
	관	보	건연구	3			3		
	관	환	경연구	3			3		
	관	보	건연구·환경연구	10			10		
연구사 소계				160	3		128	29	
	사	학	예연구	5	2			3	
	사	기	록연구	1	1				
	사	농	업연구	62			59	3	
	사	녹	지연구	8				8	
	사	수	의연구	8				8	
	사	해	양수산연구	7				7	
	사	보	건연구	27			27		
	사	환	경연구	34			34		
	사	보	건연구·환경연구	8			8		

직종별		기관별		합계	본청	의사 사무처	직기 수관	사업소	합행기 의 제정관
직급별	직렬별	직	별						
지도직계				26			26		
		지도관	소계	7			7		
		관	농촌지도	7			7		
		지도사	소계	19			19		
		사	농촌지도	19			19		
소방직계				3,456	187		3,269		
		소방직	소계	3,456	187		3,269		
			소방정	18	5		13		
			소방령	59	20		39		
			소방령·공업5						
			소방령·방송통신	1	1				
			소방경·공업6	3	3				
			소방경	183	26		157		
			소방위	289	38		251		
			소방장	436	45		391		
			소방교	753	34		719		
			소방사	1,714	15		1,699		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	개정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[별표 3]</p> <p>전라북도 공무원 정원표(제61조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직종별</th> <th>직위별</th> <th>직렬별</th> <th>합계</th> <th>본청</th> <th>외청</th> <th>직속기관</th> <th>사업소</th> <th>합계</th> <th>행정기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5급</td> <td>소계</td> <td></td> <td>303</td> <td>245</td> <td>14</td> <td>10</td> <td>30</td> <td>4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5급</td> <td>행정</td> <td></td> <td>132</td> <td>99</td> <td>10</td> <td>9</td> <td>10</td> <td>4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6급</td> <td>소계</td> <td></td> <td>604</td> <td>475</td> <td>40</td> <td>12</td> <td>70</td> <td>7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6급</td> <td>행정</td> <td></td> <td>234</td> <td>185</td> <td>28</td> <td>7</td> <td>9</td> <td>5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직종별	직위별	직렬별	합계	본청	외청	직속기관	사업소	합계	행정기관	5급	소계		303	245	14	10	30	4		5급	행정		132	99	10	9	10	4		6급	소계		604	475	40	12	70	7		6급	행정		234	185	28	7	9	5		<p>[별표 3]</p> <p>전라북도 공무원 정원표(제61조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직종별</th> <th>직위별</th> <th>직렬별</th> <th>합계</th> <th>본청</th> <th>외청</th> <th>직속기관</th> <th>사업소</th> <th>합계</th> <th>행정기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5급</td> <td>소계</td> <td></td> <td>304</td> <td>246</td> <td>14</td> <td>10</td> <td>30</td> <td>4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5급</td> <td>행정</td> <td></td> <td>133</td> <td>100</td> <td>10</td> <td>9</td> <td>10</td> <td>4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6급</td> <td>소계</td> <td></td> <td>603</td> <td>474</td> <td>40</td> <td>12</td> <td>70</td> <td>7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6급</td> <td>행정</td> <td></td> <td>233</td> <td>184</td> <td>28</td> <td>7</td> <td>9</td> <td>5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직종별	직위별	직렬별	합계	본청	외청	직속기관	사업소	합계	행정기관	5급	소계		304	246	14	10	30	4		5급	행정		133	100	10	9	10	4		6급	소계		603	474	40	12	70	7		6급	행정		233	184	28	7	9	5	
직종별	직위별	직렬별	합계	본청	외청	직속기관	사업소	합계	행정기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급	소계		303	245	14	10	30	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급	행정		132	99	10	9	10	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급	소계		604	475	40	12	70	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급	행정		234	185	28	7	9	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직종별	직위별	직렬별	합계	본청	외청	직속기관	사업소	합계	행정기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급	소계		304	246	14	10	30	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급	행정		133	100	10	9	10	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급	소계		603	474	40	12	70	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급	행정		233	184	28	7	9	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**붙임1**

**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**

**1. 미첨부 근거규정**

-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

**제12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 및 제출)**

- ① 전라북도의회 의원·전라북도의회 위원회·도지사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(별지 제2호 서식)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  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  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  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이 곤란한 경우

**2. 미첨부 사유**

-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에 근거 (일부개정규칙안 시행으로 인한 별도의 비용발생 없음)

**3. 작 성 자**

- 정책기획관 지방행정6급 최도창(063-280-4238)



## 붙임2

## 관계 법령

## □ 「지방자치법」

**제125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.

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·자격·보수·복무·신분보장·징계·교육·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.

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,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.

## □ 「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」

**제68조(직급별 정원)** 정원관리기관별·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. 다만,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(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)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전라북도 공고 제2023-703호

### 전라북도의회 제출안건 공고

「지방자치법」 제55조(제출안건의 공고)에 따라 전라북도의회 제399회 임시회에 제출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전라북도지사  
2023년 4월 5일

구 분	제출 안건명	실·본부·국 (부서명, 담당자, 전화번호)
조례안 (1건)	전라북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교육소통협력국 (교육협력추진단 성지연 주무관 280-4346)
동의안 (12건)	전북신용보증재단(일자리민생경제과) 출연 동의안	기업유치지원실 (일자리민생경제과 정현민 주무관 280-3241))
	전북-KDB-UI 지역혁신 성장펀드 조성(창업지원과) 중소기업육성기금(투자계정) 출자 동의안	기업유치지원실 (창업지원과 홍석인 주무관 280-3227)
	전북-KDB-현대 지역혁신 성장펀드 조성(창업지원과) 중소기업육성기금(투자계정) 출자 동의안	기업유치지원실 (창업지원과 홍석인 주무관 280-3227)
	전라북도 아토피·천식 교육정보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	복지여성보건국 (건강증진과 이홍례주무관 280-4696)
	(재)전북여성가족재단(여성가족과) 출연 동의안	복지여성보건국 (여성가족과 장선경 주무관 280-2073)
	전북테크노파크(미래산업과) 출연 동의안	미래산업국 (미래산업과, 임은지 주무관 280-4727)

구 분	제출 안건명	실·본부·국 (부서명, 담당자, 전화번호)
	전북테크노파크(주력산업과) 출연 동의안	미래산업국 (주력산업과, 여미지 주무관 280-3577)
	자동차융합기술원(주력산업과) 출연 동의안	미래산업국 (주력산업과, 여미지 주무관 280-3577)
	전북신용보증재단(주력산업과) 출연 동의안	미래산업국 (주력산업과, 여미지 주무관 280-3577)
	민관 상생협력형 단기부품 기술개발 사업 사무의 위탁·대행 동의안	미래산업국 (주력산업과, 여미지 주무관 280-3577)
	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(대외협력과) 출연 동의안	교육소통협력국 (대외협력과 김성준 주무관 280-2208)
	전북테크노파크(교육협력추진단) 출연 동의안	교육소통협력국 (교육협력추진단 김룡 주무관 280-4597)